

성남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9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5월 26 일

발 의 자 : 박권중 의원 외 9 인

1. 제안이유

성남시의회 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관계공무원의 범위 규정 (안 제2조)

- 제2호중 “실·과장급”을 “과장급”으로 하고,
- 제3호중 “소속행정기관장”을 “소속행정기관장 및 과장급”으로 하고
- 제4호중 “소속행정기관”을 “법제 108조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”으로 하며, “실·과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”으로 개정함.

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중 “실·과장급”을 “과장급”으로 하고, 제3호중 “소속행정기관장”을 “소속행정기관장 및 과장급”으로 하고, 제4호중 “소속행정기관”을 “법제 108조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”으로 하고, “실·과장”을 “담당관, 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범위) (생략) 1. (생략) 2.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·국장, 담당관, 실·과장급 3. 법제104조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<u>소속행정기관장</u> 4. <u>소속행정기관의</u>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	제2조(범위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과장급 3. ----- ----- <u>소속행정기관장 및 과장급</u> 4. <u>법제108조내지 제111조의 규정</u> 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----- <u>담당관·과장과</u> -----